

「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908호 「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지난 1월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
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의 주관부서를
“여성정책담당관”에서 “여성권익담당관”으로 변경하고,
정책대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“청소년건강센터”를
“십대여성건강센터”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
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